

「국민QR 결제」 가맹점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가맹점"이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 "국민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은행" 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QR 결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가맹점"이란 "은행"과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합니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민QR 결제 서비스" 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2. "회원"이란 "은행"이 제공하는 "국민QR 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의 승낙을 통해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3. "국민QR 결제 서비스"란 "회원"이 "상품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KB스타뱅킹 등 "은행"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4. "국민QR 결제 가맹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대금을 "국민QR 결제" 거래를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은행"이 대금정산 등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5. "국민지갑"이란 "은행"이 생활연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앱 또는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 6. "스타포인트"란 "은행"이 부여한 "회원" 계정에 저장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전자증표로서 "회원"이 직접 충전하거나, "국민지갑" 이용에 따른 지급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부여 받아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7. "수수료"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맹점"이 지불하는 이용 대가를 의미합니다.
 - 8. "모바일 기기"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 9. "결제수단"이란 금융회사의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입 및 이용하기 위한 지급수단 일체를 말합니다.
 - 10. "제휴사"란 "은행"과 계약에 따라 "국민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②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은행"의 국민QR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스타포인트 서비스 이용약관, 국민지갑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은행"이 정한 절차를 통해 적합성 검증 및 "가맹점" 정보 등을 입력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승낙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 ② "가맹점"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은행"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서비스" 이용화면에 명시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은행"과 "가맹점"간에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4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방법)

- ① "가맹점"은 "가맹점"에 비치된 QR 또는 "가맹점"에서 생성한 QR을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등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승인절차를 완료합니다.
- ② QR을 "회원"이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QR을 생성하고 "가맹점"은 이를 스캔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③ "가맹점"은 거래 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단말기 또는 별도로 정한 방법을 통해 거래 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거래 승인이 완료된 경우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번호, 가맹점명, 거래일시 등 "은행"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표시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과 "가맹점" 간 해당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이용은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은행"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은행"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나,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⑥ "가맹점"은 "국민QR 결제 서비스"의 결제 요청 정보 및 매출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됩니다.
- 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해킹, 피싱 등의 행위로 인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합니다.
- ⑧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제휴사"의 별도 약관이 있는 경우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보제공 등의 동의 절차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공동마케팅)



"가맹점"은 "은행"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국민QR 결제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회원"이 "가맹점"과 "은행"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의 제기에 대한 처리)

- ① "은행"은 "회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국민QR 결제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은행"에 회신해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거래 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거래 처리 이외에 "가맹점"과 "회원"간에 발생 가능한 상거래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배상합니다.

제7조(결제 취소)

- ① "가맹점"은 "회원"이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은행"은 이에 협조합니다.
- ② "회원"이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거래 취소 정책은 "가맹점"의 정책에 따릅니다.
- ③ "국민QR 결제 서비스"의 경우 결제 즉시 "가맹점"의 "은행" 계좌(이하 "정산계좌"라 합니다)로 정산되므로, "가맹점"의 책임 하에 직접 취소처리하며 "가맹점"은 취소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에 직접 결제를 취소하여 "회원"의 계좌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대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합니다.
- ④ "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취소를 진행한 경우, 기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공제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제8조(가맹점 수수료)

- ① "가맹점"은 "은행"이 정하여 통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은 "가맹점"의 "서비스" 신청화면 및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③ "은행"은 시장환경의 변화, 법규, 행정지도 등에 따른 "수수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변경 사유 및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통지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가맹점"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9조(거래금액의 정산 및 지급)

- ① "은행"은 "회원"이 "결제수단"을 통해 지불한 거래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정산대금"이라 합니다)을 "가맹점"의 "정산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가맹점" 또는 "제휴사"와 "은행"이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또는 "제휴사"가 요청한 "정산계좌"로 "정산대금"을 입금합니다.
- ② "은행"은 다음의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SMS,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
 - 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은행" 및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 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 3. "가맹점"이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가맹점"이 제1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가맹점"이 제1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은행" 또는 "가맹점"은 "정산대금"과 관련하여 과오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합니다.

제10조(정보 제공)

- ① "은행"은 정당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가맹점" 승인 및 관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가맹점"이 사전에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 동의한 사항에 따라 취득한 "가맹점"의 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사전에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 동의한 사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과 "회원"간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과 "가맹점"은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에 대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수사기관, 조세기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 ① "가맹점"은 주소 이전, 판매 품목의 변화,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으로 인해 더이상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위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달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가맹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은행"이 제1항의 변경사항을 이미 알았거나 "은행"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계약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판매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국민QR 결제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상품 등"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가맹점"은 "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상품 등"의 제공 등이 없이 "국민QR 결제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국민QR 결제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 명의로 "국민QR 결제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국민QR 결제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6.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국민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
-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국민QR 결제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손해배상)

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단,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은행"이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이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가맹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③ "은행"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월 전까지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SMS,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약관 개정사항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약관 개정사항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면서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SMS,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서비스의 제한 및 해지)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등" 및 "국민QR 결제 서비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다. 예금, 적금 및 부금



-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 급
-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바.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 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아. 「전통 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자.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차. 기타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 법인명의(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단, 제9조 제1항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외
- 3. "가맹점"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 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 사실을 서면 통보 받은 경우
- 4. "서비스" 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필요부속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 6.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7.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한국소비자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기관이나 이외 공공기관, "은 행"을 상대로 다수 혹은 집중적으로 "가맹점"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위 민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8.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 받은 경우
- 9. "가맹점"의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10.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 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 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12.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13. 1년 이상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 ② "은행"은 제 1항의 경우 "서비스"의 해지 또는 정지 예정일 7일전까지 "서비스"가 해지 또는 정지되는 사실을 SMS,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전화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가맹점"에게 통지하며, "서비스"의 해지 또는 정지 예정일까지 "가맹점"이 "은행"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화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은행"의 승인을 통하여 완료되며, 기 발급되었던 QR은 승인 즉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17조(신의성실 및 기밀유지)

- ① "가맹점"과 "은행"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제휴사"와 "은행"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8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가맹점" 또는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19조(약관의 준용)

-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의 스타포인트 서비스 이용약관, 국민지갑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오픈뱅킹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② "가맹점"이 "은행"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부 친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